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4. 10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7 (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

나. 제 안 사 유

ㅇ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

다. 폐 지 사 유

ㅇ 현행 펙스 민원처리는 "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처리 지침" (내무부 예규)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ㅇ 본 조례 폐지안은 현행 펙스 민원처리는 "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 처리지침"(내무부 예규)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　　부 :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97 - 41

제출년월일 : 1997. 4. 10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 안 이 유

o 현행 FAX 민원처리는 "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발급 처리지침"(내무부 예규 제782호, '96. 8. 29)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"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"를 폐지하고자 함.

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